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u><신 설></u>	<p>제186조(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(이하 이 조에서 “인구감소지역등”이라 한다)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.</p> <p>1. 매매계약 체결(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당시 인구감소 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</p> <p>2.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.</p> <p>1.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</p> <p>2.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.</p> <p>1.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(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</p>